

#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12.14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2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2.21 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특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상요인이 160%인 우리군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상수도 사용료 평균 30%인상(안 별표1)
- 급수장치손료에 대해서 50%인상(안 별표2)
-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 사용한자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20% 감면(안제 37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

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.

- 2001년 10월 상수도 자산평가와 원가산정 용역의 결과에 따라 생산원가의 39%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나아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임.
- 기타 절차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평창군 생산원가가 다른 도시와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?	○ 최근 신규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고 공급세대수가 적기 때문임
○ 상수도 요금현실화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?	○ 2005년도까지 70%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현실화는 안될 것으로 판단됨.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